

서울특별시



우100-744 서울 중구 태평로1가 31번지 / 전화 (02) 731-6353 / 전승 731-6755

문서번호 도개58540 - 270

시행일자 1994.12.

(경유) (제 1 안)

수신 내부결재

참조



취급		시 장
보존		영 10
국 장	전 결	
과 장		법무담당관 심사필
계 장		관리계장
기안	고 대 규	협조

제목 서울 공릉1, 대치, 월계3, 방화2지구 택지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

1. 개층710-706호, 707호, 709호, 개계710-138('94.11.24)호와 관련입니다.
2. 우리시(도시개발공사)가 시행중에 있는 공릉1, 대치, 월계3, 방화2지구에 대하여 지적확정 및 마무리 정리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으로 도시개발공사 사장이 개발기간 및 시행기간을 1년 연장 신청하였기,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제1항, 제9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의 규정에의거 다음과 같이 택지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변경승인(기간 연장)하고자 합니다.

다 음

구 분	개발계획 변경(개발기간)	실시계획 변경(시행기간)
공릉1 지구	○ 기정 : '91. 3.25 ~ '94.12.31	○ 기정 : '91. 8.29 ~ '94.12.31
	○ 변경 : '91. 3.25 ~ '95.12.31	○ 변경 : '91. 8.29 ~ '95.12.31
대치 지구	○ 기정 : '89.10.23 ~ '94.12.31	○ 기정 : '89.12.16 ~ '94.12.31
	○ 변경 : '89.10.23 ~ '95.12.31	○ 변경 : '89.12.16 ~ '95.12.31
월계3 지구	○ 기정 : '91. 3.25 ~ '94.12.31	○ 기정 : '91. 8.24 ~ '94.12.31
	○ 변경 : '91. 3.25 ~ '95.12.31	○ 변경 : '91. 8.24 ~ '95.12.31
방화2 지구	○ 기정 : '91. 1.18 ~ '94.12.31	○ 기정 : '91.10.10 ~ '94.12.31
	○ 변경 : '91. 1.18 ~ '95.12.31	○ 변경 : '91.10.10 ~ '95.12.31

첨 부 : 1. 변경승인 신청공문 각 1부.

2. 고시문 각 1부. 끝.

134

서울특별시 장



(제 2 안)

수신 : 도시개발공사 사장

참조 : 개발부장

제목 : 서울 공릉1, 대치, 월계3, 방화2지구 택지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

1. 개총710-706호, 707호, 709호, 개계710-138('94.11.24)호와 관련입니다.

2. 위 대호로 제출한 공릉1, 대치, 월계3, 방화2지구 택지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 신청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제1항, 제9조제1항 및 등법시행령 제18조제1항의 규정에의거 다음과 같이 택지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변경승인(기간 연장)하니 등 기간내 사업이 완료될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다 음

* 제 1 안 다음 이하 이기 시행 *

첨 부 : 고시문 각 1 부. 끝.

서 울 특 별 시 장

(제 3 안)

수신 : 건설부 장관

참조 : 택지개발과장

제목 : 서울 공릉1, 대치, 월계3, 방화2지구 택지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 보고

1. 우리시가 시행하는 서울 공릉1, 대치, 월계3, 방화2지구 택지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, 제9조 및 등법시행령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승인 하였기 보고 합니다.

다 음

* 제 1 안 다음 이하 이기 시행 *

* 연기 사유 : 준공을 위한 지적확정 업무처리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

첨 부 : 고시문 각 1 부. 끝.

서 울 특 별 시 장



(제 4 안)

수신 : 총무처 장관

참조 : 법무담당관

제목 : 관보 게재 의뢰

아래와 같이 관보게재를 의뢰하오니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관보게재 구분 : 고시

나. 관보게재 건명 : 서울 공릉1지구 택지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
서울 대치 지구 택지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
서울 월계3지구 택지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
서울 방화2지구 택지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

다. 근거 법규 :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제2항, 제9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
제7조제3항, 제8조제6항

첨부 : 고시문 각 2부. 끝.

서울특별시청

(제 5 안)

수신 : 수신처 참조

참조 : 도시정비과장

제목 : 서울 공릉1, 대치, 월계3, 방화2지구 택지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 통보

1. 우리시(도시개발공사)에서 시행중에 있는 서울 공릉1, 대치, 월계3, 방화2지구
의 택지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별첨과같이
변경승인(기간연장)하였기 통보하니 업무에 참고 바랍니다.

첨부 : 고시문 각 1부. 끝.

서울특별시청

수신처 : 노원구청장, 강남구청장, 강서구청장



고 시 (안)

서울특별시고시 제1994 - 394호

심사	1994.12.5	제 391 호
담당자	정대영	부담담관

서울 공릉1지구 택지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

서울특별시고시 제1993-363호('93.11.17)에 따라 택지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(기간연기)된 공릉1지구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제1항·제9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변경승인하였기 같은법 제8조제2항 및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같이 고시합니다.

1994 년 12월 일

서울특별시장

1. 개발계획 변경

○ 개발기간

[기 정 : '91. 3. 25. ~ '94. 12. 31.
 변경 : '91. 3. 25. ~ '95. 12. 31.

2. 실시계획 변경

○ 사업시행기간

[기 정 : '91. 8. 29. ~ '94. 12. 31.
 변경 : '91. 8. 29. ~ '95. 12. 31.

※ 기타사항은 변경없음.



고 시 (안)

서울특별시고시 제1994 - 315 호

심사	1994. 12. 9	제 372호
담당자	정책실 4계정	법무담당관

서울 대치지구 택지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

서울특별시고시 제1993-384호('93.12.1)에 따라 택지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(기간연기)된 대치지구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제1항·제9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변경승인하였기 같은법 제8조제2항 및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같이 고시합니다.

1994 년 12월 일

서울특별시장

1. 개발계획 변경

○ 개발기간

기 정 : '89. 10. 23. ~ '94. 12. 31.
 변 경 : '89. 10. 23. ~ '95. 12. 31.

2. 실시계획 변경

○ 사업시행기간

기 정 : '89. 12. 16. ~ '94. 12. 31.
 변 경 : '89. 12. 16. ~ '95. 12. 31.

* 기타사항은 변경없음.



고 시 (안)

서울특별시고시 제1994-386 호

심사	1994. 12. 5	제 386 호
담당자	김정호	부담담
	<i>[Handwritten Signature]</i>	

서울 월계3지구 택지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

서울특별시고시 제1993-382호('93.12.1)에 따라 택지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(기간연기)된 월계3지구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제1항·제9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변경승인하였기 같은 법 제8조제2항 및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같이 고시합니다.

1994 년 12월 일

서울특별시장

1. 개발계획 변경

○ 개발기간

- 기 정 : '91. 3. 25. ~ '94. 12. 31.
- 변 경 : '91. 3. 25. ~ '95. 12. 31.

2. 실시계획 변경

○ 사업시행기간

- 기 정 : '91. 8. 24. ~ '94. 12. 31.
- 변 경 : '91. 8. 24. ~ '95. 12. 31.

* 기타사항은 변경없음.

고 시 (안)

심사(1994.12.17) 제 334 호
담당자 (신우담) 신우담
12/17

서울특별시고시 제1994-387 호

서울 방화2지구 택지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

서울특별시고시 제1993-358호('93.11.17)에 따라 택지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(기간연기)된 방화2지구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제1항·제9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변경승인하였기 같은법 제8조제2항 및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같이 고시합니다.

1994 년 12월 일

서울특별시장

1. 개발계획 변경

○ 개발기간

- [기 정 : '91. 1. 18. ~ '94. 12. 31.
- [변 경 : '91. 1. 18. ~ '95. 12. 31.

2. 실시계획 변경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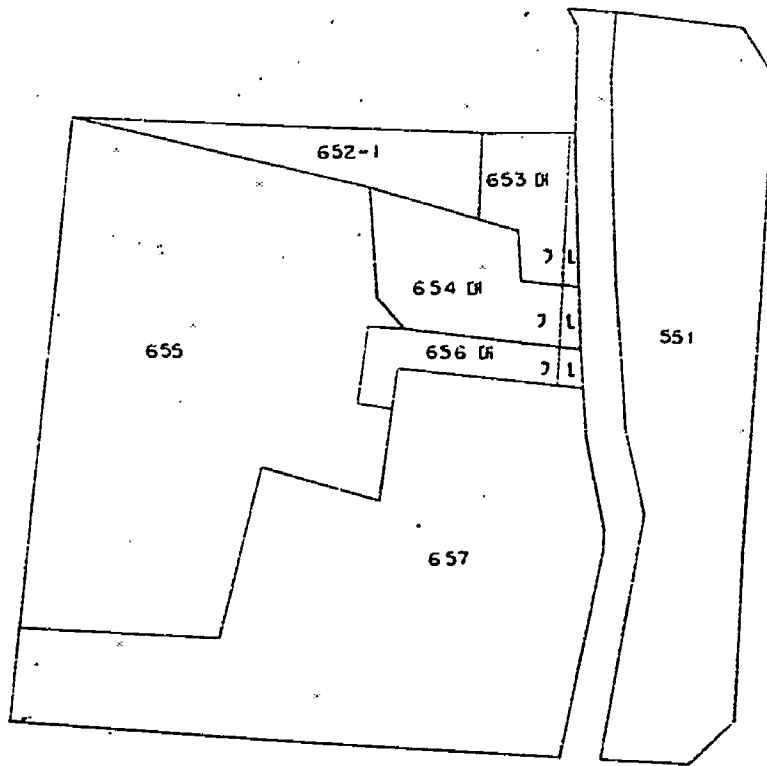
○ 사업시행기간

- [기 정 : '91. 10. 10. ~ '94. 12. 31.
- [변 경 : '91. 10. 10. ~ '95. 12. 31.

* 기타사항은 변경없음.

(별지 제8호 서식)

(발급번호 도장키)		(경계복원) 현황	측량성과도	
토지소재	시군구 중구	읍	리 653 654 번지(6 필) 면 남대문5가 동 656	축적 600 분의 1
측량일자	1993년 4월 15일		측량자	지적기사 급
			작성자	지적기사 2급 이기



현장표시

범	명	칭
—		지정선
		이하역백

지적측량성과에 의하여 작성하였습니다.

면적표시

지적및부호	면적(m ²)
653	63.7
가	11.0
가	74.7
654	127.7
가	7.8
가	135.5
656	56.8
가	5.7
가	62.5
비	고

1994년 9월 13일

대한지적공사서울특별시중구출



본 도면은 측량에 사용할 수 없음.

190mm x 268mm 복수미봉지